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을 위한 간첩죄 신설 등〉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88호)
- 위성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간첩죄의 대상 확대 : 적국→외국	4
2.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죄 처벌(장경태의원안)	8
3. 형법 제2장(외환의 죄)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	12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장경태의원안

가. 발 의 자: 장경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7. 4.

다. 회 부 일: 2024. 7. 5.

2. 위성락의원안

가. 발 의 자: 위성락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7. 22.

다. 회 부 일: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장경태의원안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이나 외국에게 유출한 경우 현행법상 간첩죄

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법률들은 간첩죄 대비 처벌이 약해 외국기업이 아닌 적국, 외국 정보기관 등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적국,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적국, 외국에 의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98조).

2. 위성락의원안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안 제98조).

Ⅲ. 검토의견

1. 간첩죄의 대상 확대 : 적국→외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의 간첩죄는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¹⁾

장경태의원안은 현행 간첩죄에 ‘외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 위성락의원안은 현행 간첩죄 규정의 ‘적국’을 삭제하면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장경태의원안	위성락의원안
第98條(間諜) ①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幫助한 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の 懲役에 處한다.	第98條(間諜) ① (현행과 같음)	제98조(간첩) ① <u>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u> ----- ----- <u>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의</u> ----- ----- -----.
② 軍事上の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에 유출한 자-----.	② ----- <u>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u> ----- ----- <u>제1항의</u> ----- -----.
<신설>	③ <u>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u>	

1)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신 설>	<u>에 처한다.</u> ④ <u>군사상의 기밀을 외국</u> <u>에 누설한 자 또는 국가핵</u> <u>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u> <u>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u>	
-------	---	--

나. 개정안의 검토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²⁾을 탐지·수집(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³⁾을 적국에 누설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때 ‘적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거나 전쟁을 수행 중인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⁶⁾⁷⁾

2) [대법원 1988.11.08. 선고 88도1630 판결]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며, 그 탐지·수집의 대상이 우리 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여서 그 기밀사항이 국외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의 국가기밀에 포함된다.

3)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52 판결]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군사상 기밀을 포함하므로 학생대모 상황, 선거상황등과 같이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 것을 탐지, 수집하는 것도 간첩이 된다.

4)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 때의 ‘누설’은 이미 지득한 국가기밀을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해 통보하거나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김호정,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 2016 p.66)

5) [대법원 1983.03.22. 선고 82도3036 판결]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6)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7) 박상기, “간첩죄에 관한 소고”, 2007, p.570

현행 조항은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제정 형법(1953.9.18.) 규정을 토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임. 그러나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이라는 좁은 개념보다는 적대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처벌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⁸⁾

이는 현행법상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설 등은 「군사기밀보호법」⁹⁾이나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¹⁰⁾나, 외교상 기밀누설죄¹¹⁾ 등을 적용·처벌할 뿐이어서, 「형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점에 기인하는 것임.¹²⁾

8) 장영일/황태정, “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경희법학 제46권 제3호(2011), p.102. 신의기,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법제 정비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6. 12., p. 15.

9)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11조(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1)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1995.12.05. 선고 94도2379 판결]

[1]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2]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2)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대북 정보수집을 맡는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군형법」상 간첩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반면 군사기밀누설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고,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죄에 외국 등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을 적용하여도 최대 15년의 법정형까지 가능함. 또한,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군형법」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현재 국제안보환경은 우방국 간에도 치열하게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만큼 다원화되어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받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기밀 탐지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

<개정안의 비교 : 간첩죄의 대상 및 법정형>

	현 행	장경태의원안	위성락의원안
대상	적국	외국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적국 부분은 현행 유지	적국 삭제
법정형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 징역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적국’ 개념의 삭제와 관련하여, 위성락의원안은 현행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삭제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바, 현행법은 ‘외환의 죄’장에서 ‘외국’과 ‘적국’을 구별하여 규정¹³⁾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생략)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13)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법정형에 있어서, 위성락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장경태의원안은 현행 적국을 위한 간첩죄(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보다 낮게(15년 이하의 징역) 규정하고 있음. ‘외국’을 위한 간첩의 경우 그 불법성이나 국익침해의 정도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적국’을 위한 간첩과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상 외국을 위한 군사기밀누설죄¹⁴⁾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정형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죄 처벌(장경태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적국 및 외국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자도 각각 적국 및 외국을 위한 간첩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4) 「군사기밀 보호법」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현행	장경태의원안
第98條(間諜) ①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幫助한 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 ② 軍事上の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신 설> <신 설>	第98條(間諜) ① (현행과 같음) ② 軍事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에 유출한 자-----. ③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軍事상의 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개정안의 검토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기업이 지닌 핵심기술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에도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음. 이 경우 현행법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동 법률들은 주로 피용자 등 회사 내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비밀) 유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외국 및 외국세력에 의한 본격적인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¹⁵⁾

따라서 국가핵심기술¹⁶⁾과 같은 국가산업기밀을 적국 또는 외국에 유출할 경우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타국에 의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별도로 ‘국가핵심기술’을 간첩죄의 행위객체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외적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은 ‘국가기밀’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¹⁷⁾ 개정안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음.

둘째, 개정안은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적국·외국을 위하여’¹⁸⁾ 간첩한 경우를 처벌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단순히 ‘적국·외국에’ 유출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상대 국가 등과의 의사연락이 없는 경우도 간첩죄와

15) 김호정, “외국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비교연구와 우리의스파이규제법정비방안”, 국가정보연구 제2권 제2호, p. 142.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7) 김호정,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 외법논집 제40권제1호, 2016, p.74., 정영일/황태정, 전 게논문, p. 419.

18) 적국과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임(주석형법[형법각칙 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p. 73.).

동일한 형을 과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국을 위한 비밀누설행위 처벌 규정 체계>

현행	대상	행위	법정형
「형법」 제98조제1·2항	적국을 위하여	- 국가기밀 수집·탐지 - 군사기밀 누설	사형, 무기, 7년이상 징역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	- 국가기밀 수집·탐지 - 군사기밀 누설	사형, 무기, (7년이상 징역)
「군사기밀보호법」 제11·12·15조	외국·외국인을 위하여 ¹⁹⁾	군사기밀 수집·탐지/ 누설	15년이하 징역/ 1년6월이상 징역
「형법」 제113·127조	(누구에게든)	- 공무상 비밀 누설 - 외교상 비밀 수집·탐지· 누설	2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산업기술보호법」 제14·36조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 산업기술 유출	15년이하 징역 또는 15억원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15년이하 징역 또는 15억원이하 벌금

셋째, 현재에도 외국에 대한 산업기밀 등 국가핵심기술의 누설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경우 이들 법률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위

19) 단순 군사기밀누설보다 가중처벌됨.

「군사기밀 보호법」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한 법정형 정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⁰⁾

3. 형법 제2장(외환의 죄)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

「형법」 제2장(외환의 죄, 제92조~제104조)에 규정된 범죄들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인데, 연혁적으로 지금까지 ‘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항상 외환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더욱이, 현행법 제104조는 동맹국²¹⁾에 대한 ‘외환의 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²²⁾ 개정안대로 외국, 외국인 단체 등을 포함할 경우 외국이 우리나라의 동맹국인 외국에 대하여 행한 간첩죄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바, 처벌의 필요성·실효성이 문제 될 수 있음.

또한, 현행 「형법」 제102조²³⁾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여 적국을 위한 외환의 죄(제93조~제101조)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는 현행 제10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0) 예컨대, 개정안에 따르면 적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누설하는 경우 사형·무기·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나, 동일 행위에 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특별법이 기본법에 비하여 더 경하게 처벌되는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음.

21)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임(1953. 10. 1. 조인, 1954. 11. 18.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22)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23)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할 경우, ‘외환의 죄’ 장이 아닌 별도의 장에 가칭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침해죄’ 장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방식²⁴⁾이나, 현행 ‘외환의 죄’ 장 제102조 및 제104조에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는 개정안 조문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2장(외환의 죄)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02-6788-5053

24)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침해죄’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견해. 장열일/황태정, “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경희법학 제46권 제3호, 2011, pp. 101~1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예비·음모)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

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11조(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 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

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